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106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 함(안 제4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제1항제1호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1. 8. 12. ~ 9. 2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3) 기획예산과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4) 여성가족과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예”를 “자동차세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)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“성실납부자”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<u>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</u>)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.</p>	<p>제4조(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동차세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연평균 1억원 미만 예산의 범위

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징수과 김천기 (☎ 02-3153-8702)